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	보 도 자 료	2016. 8. 11(목)	
		문 의	국무조정실 국정상황과 과장 김민 / 사무관 장용희 (☎ 044-200-2065)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 과장 곽희정 / 사무관 유진미 (☎ 02-748-5803)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과장 나웅진 / 사무관 윤종빈 (☎ 044-201-4333) 대구광역시 공항추진단 과장 박대경 / 과장 이원재 (☎ 053-803-6910)
* 즉시 사용			

정부, 대구공항 통합이전 추진방식 및 일정 확정

- (추진방식) 군 공항은 기부대양여 방식, 민간공항은 국토부(공항공사) 사업으로 동시이전
- (추진일정) 건의서평가, 조사용역 등을 거쳐 금년내 이전후보지 선정·발표
- 수원, 광주 등 他공항도 군공항이전특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속한 이전 추진

□ 정부는 8.11(목) **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**로 열린 **'대구공항 통합이전 TF' 3차 회의**에서 「**대구공항 통합이전**」사업의 **추진방식**과 **추진일정**을 확정하였다.

* 참석 : 국방부(공군)·국토부·기재부·행자부·환경부·문체부·법제처·대구시·국조실 등

1. 사업방식 : 통합이전하되 민간공항 이전은 국토부(공항공사) 사업으로 추진

□ 정부는 사업 **추진방식**으로 군공항(K-2)과 민간공항을 **통합 이전**하되 공항별로 **관리주체가 다르고** 군 공항은 **별도로 법이 정한 절차**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,

○ **군 공항**은 「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'군공항 이전특별법')에 따라 '**기부 대 양여 방식***'으로,

* 사업시행자가 이전지역에 군 공항 대체시설을 건설·기부하고, 국방부는 용도 폐지된 종전 시설과 부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여 (군공항이전특별법 제9조)

○ **민간공항**은 **현 민항부지 매각대금 등을 활용**하여 국토교통부(공항공사)가 **지역 거점공항으로서 장래 항공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**로 건설하기로 하였다.

□ 다만,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향후 **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의**를 통해 **'동시에 이전을 완료'**하기로 하였다.

2. 추진일정 : 금년내 이전후보지 선정·발표 추진

□ 또한, 정부는 8월 중 대구시에서 제출한 이전건의서의 타당성을 평가하고, 예비이전후보지 조사 용역에 즉시 착수하여 '**금년 내**'에 **이전후보지** 선정·발표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.

□ 이후 관련 지자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, 이전부지선정위원회 심의 등 군공항이전특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**최종 이전부지를 조속히 결정**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.

3. 대구공항 통합이전 시 경제적 효과

□ 공항을 유치하는 지역은 군 장병·가족 등 인구유입에 따라 **소비 활성화 및 고용창출**(약 1만여명) 효과가 예상되고,

○ 또한, 민간공항이 통합이전 됨으로써 이전 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○ 그밖에 주민생활 지원사업, 공공시설 설치 지원 등 정부 차원의 **다양한 지원사업이 시행**되어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.

* 정부는 확대된 「소음 완충지역 설치」 등 지역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계획임

□ 새로 이전되는 민간공항은 **대구·경북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**하여 **편의성이 제고**될 수 있도록 건설할 예정이다.

4. 수원·광주 군공항 이전 절차도 신속히 추진

□ 또한, 정부는 군공항 이전을 희망하고 있는 **수원·광주 등** 다른 지역에 대한 사업도 **신속히 추진**하기로 하였다.

○ **수원**은 이미 이전건의서에 대한 타당성 평가가 완료되었으므로 국방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하여 관계 지자체와 협의할 예정이다.

○ **광주**의 경우 8.3 ~ 4일 이전건의서 평가를 마친 만큼, 최종 승인 여부 결정에 따라 향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.

□ 아울러, 정부는 **군공항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**을 위해,

○ 대구·광주 공항의 이전건의서 평가·승인이 완료된 이후에 **군공항 이전사업**을 **종합적으로 지원**해 나가기로 하였다.